

202.28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 29-a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후속 지시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호를 비롯해 행정명령 202.14호까지 포함하는 기타 후속 행정명령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모든 법과기타 지시의 중지 및 개정을 다음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6월 6일 토요일까지 30일 동안 연장합니다.

- 다음 법령 및 규정의 중단 또는 변경은 계속되지 않으며, 2020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 규범 및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자격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전문가가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 NYCRR) 10장 405.9호. 긴급 의교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의심자에게 의료 서비스 또는 서비스 연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치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조항 (d) 및 (u)의 범위를 제외하고 NYCRR 10장 400.9호, NYCRR 10장 400.11항, NYCRR 10장 405항, NYCRR 10장 403.3항, NYCRR 10장 403.5항, NYCRR 10장 800.3항. NYCRR 10장 400.12항, NYCRR 10장 415.11항, NYCRR 10장 415.15항, NYCRR 10장 415.26항, NYCRR 14장 620항, NYCRR 14장 633.12항, NYCRR 14장 636-1항, NYCRR 14장 686.3항 및 NYCRR 14장 517항.
 - 정신보건법(Mental Hygiene Law) 41.34항, 29.11항 및 29.15항.
 - 커미셔너가 지역 또는 주정부 응급 요원 위원회의 승인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3002항, 3002-a항, 3003항 및 3004-A항.
 - 교육법(Education Law) 6527항 세부조항 (2), 6545항, 6909항 세부조항 (1). 교육법 6530항 세부조항 32, NYCRR 8장 29.2항 세부조항 (a) (3)절, NYCRR 10장 58-1.11항, 405.10항 및 415.22항.
 - 발달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커미셔너의 승인에 따라 달리 중단된 건설, 에너지 절약 또는 기타 건축 법규와 관련된 모든 규정, 모든 주정부 및 지방법, 조례, 규정은 커미셔너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위치, 가용 병상 수,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 변경할 경우에만 적용됨.

추가로, 법률, 지방법, 조례, 명령, 규정, 규칙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 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6월 6일 토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을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다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일반 의무법(General Obligations Law) 7-103항, 7-107항 및 7-108항.
 -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면허 보유자는 세입자 또는 면허자의 동의 하에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이에 발생한 이자는 체납되거나 만기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전체 월 임대료 지불 미만인 경우, 이러한 동의는 그 달에 지불해야 할 나머지 임대료에 대한 면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대응하는 것은 동의를 표현하는 충분한 수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 집주인은 주정부 또는 연방법에 따라 실업 보험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 또는 면허자에게 그러한 구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 또는 사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자는 그러한 계약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유해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료의 지불에 사용되는 모든 보증금은 임차인 또는 면허 소유자가 보충해야 하며, 매달 임대료로 사용되는 금액의 1/12의 비율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 지불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면허 보유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월별 보충액 대신 소유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해당 보험을 보충액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238-a항 세부조항 2에 따라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8월 20일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불 지연에 대해 소유자, 임대인, 전대인 또는 양도인이 어떠한 지불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 선거법(Election Law) 8-400항은 인해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한 부재자 투표 신청서의 초안 및 인쇄본이 2020년 6월 23일에 시행되는 모든 예비 또는 특별 선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되도록 필요한 범위까지 개정됩니다. 이 경우, 총선 투표를 위한 목적으로 이미 우편으로 발송하였거나 완료된 부재자 투표 신청 및 영구 부재자 투표 요청은 2020년 6월 23일에 시행되는 모든 예비 및 특별 선거에 대한 부재자 투표로서 모든 경우에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모든 선거관리위원회(Boards of Elections)는 유권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웹사이트에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완료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행정 명령 202.8호에 포함된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에 따른 모든 시간 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 중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특정한 청원에 대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출석을 금지하는 범위까지 형사 소송법 182.30항.
 - (1) 피고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의 청문회 출석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2) 법원이 증인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경우, 법원이 합당한 이유에 따라 형사 소송법 245.70호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의 목소리 변조 및/또는 모습을 가리거나 보호하고,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소송법 180.60호.
 - 법원이 2020년 5월 8일부터 144시간 내에 코로나19로 인해 대배심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중죄 혐의를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항의 세부조항에 따라 유효한 원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원인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형사 소송법 180.80항.
 - 코로나19로 인해 대배심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45일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중죄 혐의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피고가 180.80항에 의거한 예비 청문회를 거친 경우 해당 조항의 세부 조항에 따라 유효한 원인을 구성한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형사 소송법 190.80호.

또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6월 6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실업 보험이나 주정부 또는 연방법에 따른 혜택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으며,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곤란을 겪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주거 또는 상업 모기지의 임대료 미지불 및 담보권 행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20일부터 60일 동안 모든 주거 및 상업 임대인 추방 과정을 시작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 전역의 학교 폐쇄와 관련된 행정명령 202.14호 및 202.4호에 포함되었으며 행정명령 202.11호에 따라 개정된 지시는 행정명령 202.18호를 연장하였으며, 이로써 해당 학년의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학교가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유지됩니다. 교육구는 필수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대체 교육 옵션, 식사 제공, 보육에 대한 계획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2020년 5월 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